4 재정운용계획

4-1. 성인지 예산현황

-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,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.
 -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.
-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, 아래의 표에서는 충청 북도의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,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: 개, 백만원)

구 분	사 업 수	예 산 액
총 계	71	73,519
여성정책추진사업	11	10,260
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	42	55,229
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	18	8,030

- ▶ 2017년 당초예산 기준
- ◆ 보다 자세한 내용은 <u>[별첨4-1] 2017년 성인지예산서</u>를 참조하세요 (http://www.chungbuk.go.kr/finance/contents.do?key=86132)

●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?

-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.
- 여성능력개발교육,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.

●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?

-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,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.
- 정보화교육, 지역정보화 촉진, 공무원 교육훈련,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.

●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?

-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,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

4-2. 주민참여 예산현황

-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.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,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참여방법은 주민회의,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, 팩스,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.
 -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모델 2안과 3안을 혼용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
(단위:백만원)

당초 세출예산	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	모델
4,323,586	168,673	2~3안 준용

- ▶ 2017년 당초예산 기준
- ◆ 보다 자세한 내용은 [별첨4-2] 2017년 주민참여예산 현황을 참조하세요 (http://www.chungbuk.go.kr/finance/contents.do?key=86132)

❖ 표준모델

구분	모델안 1	모델안 2	모델안 3
총 원 취임 환 원 원	제1조(목적) 제2조(용어의 정의) 제3조(법령준수의무) 제4조(시장의 책무) 제5조(주민의 권리) 제6조(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) 제7조(의견수렴 절차 등) 제8조(의견 제출) 제9조(결과 공개) 제10조(위원회 운영 등)	제1조(목적) 제2조(용어의 정의) 제3조(법령준수의무) 제4조(군수의 책무) 제5조(주민의 권리) 제6조(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) 제7조(의견수렴 절차 등) 제8조(의견 제출) 제9조(결과 공개) 제10조(주민참여예산위원회) 제11조(위원회의 기능) 제12조(위원회 구성) 제13조(위원회의 운영) 제14조(연구회 운영 등)	제1조(목적) 제2조(용어의 정의) 제3조(법령준수의무) 제4조(구청장의 책무) 제5조(주민의 권리) 제6조(운영계획수립공고 및 적용범위) 제7조(의견수렴 절차 등) 제8조(의견 제출) 제9조(결과 공개) 제10조(위원회 구성) 제11조(위원의 위촉 및 임기) 제12조(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) 제13조(기능) 제14조(운영원칙) 제15조(분과위원회) 제15조(분과위원회) 제15조(병과위원회) 제16조(회의 및 의결) 제17조(회의록 공개의 원칙) 제18조(해촉) 제19조(의견청취) 제20조(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) 제21조(주민참여 등 홍보) 제22조(위원에 대한 교육) 제23조(재정 및 실무지원)
기 타 부 칙	제11조(시행규칙) 부 칙	제15조(시행규칙) 부 칙	제24조(시행규칙) 부 칙

4-3. 성과계획서

-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,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.
-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, 아래의 표에서는 충청북도의 2017년 성과계획서 목표수, 단위사업수,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개, 백만원)

		성고	과계획			예산액	
실국명	전략 목표수	정책사 개수	업목표 지표수	단위 사업수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 중감
합계	29	130	296	319	3,868,482	3,748,687	119,795
공보관	1	1	4	4	4,082	3,959	124
감사관	1	1	5	2	303	323	-20
여성정책관	1	2	6	6	30,170	29,213	957
혁신도시관리본부	1	1	3	2	754	3,418	-2,664
기획관리실	1	10	16	21	258,486	239,340	19,146
재난안전실	1	8	18	18	162,983	137,038	25,945
행정국	1	7	29	25	511,895	493,511	18,384
보건복지국	1	9	13	18	1,306,163	1,232,083	74,081
경제통상국	1	16	24	28	148,082	109,077	39,005
농정국	1	6	17	22	354,111	383,850	-29,738
문화체육관광국	1	8	19	21	226,971	229,324	-2,353
균형건설국	1	7	16	21	180,790	189,469	-8,679
바이오환경국	1	10	16	21	231,146	257,860	-26,715
소방본부	1	15	30	29	288,016	274,736	13,279
충북경제자유구역청	1	4	11	8	6,004	14,310	-8,306
의회사무처	1	1	4	4	9,983	9,872	112
자치연수원	1	1	3	3	5,644	5,093	551
농업기술원	1	3	14	16	36,054	31,565	4,489
보건환경연구원	1	1	3	5	8,294	7,713	581
도로관리사업소	1	3	5	7	35,424	35,471	-46
산림환경연구소	1	1	3	3	23,459	28,187	-4,729
축산위생연구소	1	5	11	11	12,749	11,481	1,268
농산사업소	1	2	10	6	3,448	3,131	317
청남대관리사업소	1	1	2	4	8,643	6,501	2,142
여성발전센터	1	1	4	5	2,554	2,144	410
내수면연구소	1	1	3	3	3,363	3,318	45
서울세종본부	1	1	1	1	557	587	-30
북부출장소	1	1	2	1	1,106	1,046	61
남부출장소	1	3	4	4	7,246	5,068	2,177

- ▶ 당초예산, 일반+기타특별회계
- ◆ 보다 자세한 내용은 <u>[별첨4-3]</u> 2017년도 성과계획서를 참조하세요 (http://www.chungbuk.go.kr/finance/contents.do?key=86132)

4-4. 재정운용상황개요서

-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.
-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, 재정자주도,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,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,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:%)

재정자립도	재정자주도	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	자체사업비율	보조사업 비율	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
31.80	46.78	32.97	25.27	61.68	12.08

- ▶ 당초예산, 일반회계 기준
- ◆ 보다 자세한 내용은 <u>2017년도 당초예산서</u>를 참조하세요 (http://www.chungbuk.go.kr/finance/contents.do?key=86132)

4-5.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

-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「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(행자부 훈령)」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,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.
-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, 의회관련 경비, 공무원 일·숙직비,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:백만원)

कु}-1ृ	곡 별	기준액 (A)	예산편성액 (B)	차 액 (B-A)
기관운영	단체장	167	167	-
업무추진비	부단체장	233	233	-
시책 업무 ²	추진 추진비	1,473	1,186	△287
	의정운영 공통경비	223	223	-
지방의회 관련경비	의회운영 업무추진비	201	201	-
	의원국외여비	101	101	-
지방그	보조금	65,950	30,824	△35,126
	장반장 코상금	-	-	
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		1,254천원/1인	4,763	
공무원 약	일·숙직비	50천원/1인	995	

▶ 기준액 산출기준은 '2017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(행정자치부)'을 참조하세요(http://lofin.moi.go.kr)

❖ 기준경비 기준 및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항목별		기준액	산출내역 (기준인원)	예산편성액	
기관운영	단체	체장	167,200	1인	167,200
업무추진비	부단	·체장	116,600	2인	233,200
시	책추진 업무추지	진비	1,473,143		1,186,400
		기 본	6,100	31명	189,100
	의정운영 공통경비	예결위	2,000	13명	26,000
		의정활동 증 액	7,594		7,594
		의장	50,400	1	50,400
지방의회 관련경비	의회운영	부의장	25,200	2	50,400
	업무추진비	상임위원장	15,600	6	93,600
		예결위원장	6,500	1	6,500
		의 원	2,500	31	77,500
	의원국외여비		23,250		23,250
지방보조금		65,950,444		30,824,013	
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기간제근로 <i>7</i>		공무원	1,254	3,755	4,708,770
		기간제근로자	300	180	54,000
공무원 일·숙직비		50		994,850	

4-6.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(세출 효율화)

- 보통교부세 자체노력(세출 효율화)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(세출 효율화)에 반영한 금액입니다.
-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.

(단위:백만원)

반영항목	기준재정수요 반영액		
반경생숙 	2016년	2017년	
계	7,518	7,053	
인건비 절감	-	53	
지방의회경비 절감	36	11	
업무추진비 절감	285	116	
행사·축제성경비 절감	1	1,715	
지방보조금(민간이전경비) 절감	6,476	4,512	
지방청사 관리 · 운영	721	646	
읍면동 통합운영	-	-	
민간위탁금 절감	-	-	

- ▶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(2016.12.30.교부결정),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
- ▶ (+) 인센티브, (-) 페널티

4-7.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(세입확충)

- 보통교부세 자체노력(세입확충)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(세입 확충)에 반영한 금액입니다.
-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.

(단위:백만원)

반영항목	기준재정수입 반영액		
건 6 8 즉	2016년	2017년	
계	△ 20,365	△12,127	
지방세 징수율 제고	△5,020	2,535	
지방세 체납액 축소	△17,496	△15,254	
경상세외수입 확충	2,251	700	
세외수입 체납액 축소	△49	△46	
탄력세율 적용	-	-	
지방세 감면액 축소	△51	△62	

- ▶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(2016.12.30. 교부결정),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
- ▶ (+) 인센티브, (-) 페널티

4-8.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

■ 2016년에 우리 충청북도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.

(단위: 백만원)

감액 사유	위반지출	지방교부세 감액금액
	합 계	168
법령위반 과다지출	긴급구조표준시스템 보강 구축 관련 물품구매 계약 부적정	13
법령위반과다지출, 예산편성기준위반	의원 연구활동비 예산 운용 부적정	125
수입징수 태만	수질 기본배출부과금 부과 등업무처리 부적정	5
법령위반 과다지출	원서천 백운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예정가격 산정 부적정	25

- ▶ 지방채발행 승인(지방재정법 11조, 55조), 투자심사(지방재정법 37조, 55조) 위반, 예산편성 기준(지방재정법 38조) 위반 및 감사원·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
- ※ 2017회계연도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입니다.

4-9.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

■ 2016년에 우리 충청북도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.

(단위:백만원)

증액 사유	평가분야와 성적	지방교부세 중액금액
	합 계	200
* ' ' '	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추진 및 지방공기업 유사행정규제정비	200

- ▶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 교부세가 증액된 경우
- ※ 2017회계연도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입니다.
- ◈ 보다 자세한 내용은 [별첨4-8] 2017년도 반영 지방교부세 감액재원 인센티브 배분 내역를 참조하세요

(http://www.chungbuk.go.kr/finance/contents.do?key=86132)